

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5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4. 10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시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로구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인터넷납부 시스템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시 “동장에게 신고”를 “구 홈페이지 활용”을 추가
(안 제10조제2항제4호)
- 나.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부과·징수 시 “구 수입증지(인증기사용) 징수”에
서 “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”을 추가 (안 제29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폐기물관리법 제13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제3항, 제4항
- 2)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(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제1항제1호
- 3)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(인터넷
납부시스템 구축)
- 4) 부구청장 방침(청소행정과-8469, 2004.7.3)호 “대형생활폐기물
인터넷 접수제도 시행계획”

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4호중 “종로구 소재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관할동장”을 “구 관할동장에게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동장”으로 하고, “내어 놓아야 하며”를 “내어 놓아야 한다”로 하며,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하다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중 “서울특별시종로구 수입증지(인증기사용)로 징수한다”를 “구 수입증지(인증기사용) 또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)</p> <p>①~② (생 략)</p> <p>1.~3. (생 략)</p> <p>4.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의 주소·성명·주민등록번호·물품명·크기·수량 등을 <u>종로구 소재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동장이</u>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<u>내어 놓아야 하며</u>, 다만,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배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<u>아니한다.</u></p>	<p>제10조(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구 관할동장에게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동장</u>----- ----- <u>내어 놓아야 한다.</u> ----- ----- <u>아니한다.</u></p>
<p>제29조(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는 <u>서울특별시종로구 수입증지(인증기사용)로 징수한다.</u></p>	<p>제29조(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<u>구 수입증지(인증기 사용) 또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.</u></p>